해외사무소 파견직원의 보수 및 여비지침

제정 2021. 07. 16.
개정 2023. 09. 26.
개정 2023. 12.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사무소 운영 규칙」 제29조에 따라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직원의 보수 및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6.>

제2조(파견직원의 보수) ① 파견직원의 연봉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파견직원에게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하여 물가 및 생활수준을 참작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③ 부양가족이 있는 파견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09.26.> <개정 2023.12.28.>

1. 가족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 각목에 한하며,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
   다.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자녀 중 장애가 있는 사람
2. 단,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가족수당은 다음 각목에 따라 지급한다.
   가. 배우자 :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나. 자녀 : 파견직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다. 파견직원의 퇴직, 본원으로의 소환, 자녀의 연령 초과 등 지급요

건이 상실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4. 부양가족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파견직원이 외교부령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09.2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동 2023.09.26.> <개정 2023.09.26.>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동 2023.09.26.> <개정 2023.09.26.>

제3조(해외체재비) ① 원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해외체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개정 2023.12.28.>

1. 주택임차료
2. 자녀학자금
3. 의무가입 보험료 중 종업원 부담분
4. 의료비
5. 삭제 <2023.09.26.>

② 제1항의 해외체재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3.09.26.>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09.26.]

제4조(주택임차료) ① 원장은 파견직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주택임차료는 외교부 재외공무원 직원주택 임차상한선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직원이 해외로 부임할 시에는 주택임차료 2개월분을 선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임차계약은 임차인을 해외사무소 명의로 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하며, 필요시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지 법과 임차 조건에 따라 임차인 명의 및 계약기간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 관리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09.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이동 2023.09.26.> <개정 2023.12.28.>

제5조(자녀학자금) ① 파견직원 자녀의 현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자녀가 취학한 유치원·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자녀 1명당 교육비는 초·중학교는 월평균 미화 700달러, 고등학교는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자녀의 현지 유치원(국외학교 내 부설 유치원 과정도 포함) 교육비는 1명당 월 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09.26.>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지 초·중·고등학교 월평균 학비가 기준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개정 2023.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견직원 자녀의 국외학교 교육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09.26.>

제6조(의무 가입보험) ① 파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파견직원 및 동반가족에 대한 주재국의 의료보험
2.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른 해외사무소의 보험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의료비 등) ① 파견직원 및 동반가족의 의료비는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주재국에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한 때에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 USD 3,00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보상받는 경우
2. 보신 및 미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 관계없는 경우

④ 파견직원이 주재국에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해 본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제8조(소득세)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파견직원의 해외 체재비 및 주재수당에 대한 현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해외이전비 지급) ① 「여비지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파견직원이 부임 또는 귀임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해외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해외이전비는 선박운송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원장은 주재국이 내륙국가로 선박운송이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운송이 필요한 때에는 별표 1의 실비의 범위 내에서 항공운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국외 가족여비) ① 「해외사무소 운영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족을 동반하는 파견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여비지급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와 출국 시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해서는 지급한다. <개정 2023.12.28.>

1. 부임 또는 귀임할 때 가족을 구 근무지로부터 신 근무지까지 동반하는 경우
2. 외국근무중 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키는 경우

3.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에 따라 동반가족을 철수시키는 경우
4.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명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 일시 귀국할 수 있다.
5. 「해외사무소 운영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족동반으로 저지대 요양을 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는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단, 제1항제5호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는 제3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12.28.>

1. 12세 이상 가족의 여비는 파견직원 본인이 이전할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12세 미만 가족의 여비는 파견직원 본인이 이전할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3. 제1항제5호에 따른 저지대 요양 시 가족의 여비는 파견직원 본인이 이동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 운임의 전액

[제목개정 2023.12.28.]

제11조(출장경비) ① 파견직원이 주재국 또는 제3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경비는 「여비지급규칙」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09.26.>

② 파견직원이 한국으로 출장을 올 경우에는 「여비지급규칙」국외여비기준을 따르되 지역 “나” 등급을 적용한다.

③ 그 밖에 여비에 대한 사항은 「여비지급규칙」에 따른다.

제12조(경조사 일시 귀국) 「해외사무소 운영규칙」 제22조의2 제 1항에 따라 파견직원이 경조사 휴가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 「여비지급규칙」별표 2에 따라 왕복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제13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파견직원의 보수 및 여비 등에 대한 사항은 본원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2021.7.16.)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9.26.)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8.)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3.12.28.>

해외근무수당

(월지급액 기준)

주재국	도시	화폐단위	G1	G2	G3	G4
미국	LA	달러(US$)	3,239	2,830	2,606	2,534
	뉴욕	달러(US$)	3,239	2,830	2,606	2,534
중국	북경	런민비(RMB)	21,369	18,539	16,980	16,763
	심천	런민비(RMB)	20,465	17,752	16,261	16,054
일본	도쿄	엔(￥)	424,697	369,132	336,661	326,821
프랑스	파리	유로(€)	3,012	2,621	2,390	2,323
영국	런던	파운드(£)	2,494	2,212	2,056	2,022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로(€)	3,012	2,621	2,390	2,32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달러(US$)	2,882	2,635	2,428	2,364
베트남	하노이	달러(US$)	2,792	2,562	2,366	2,310
UAE	두바이	달러(US$)	3,000	2,836	2,640	2,568
태국	방콕	달러(US$)	2,901	2,714	2,527	2,460
러시아	모스크바	달러(US$)	3,549	3,322	3,066	2,772
인도	뉴델리	달러(US$)	2,885	2,535	2,341	2,310
멕시코	멕시코시티	달러(US$)	2,978	2,761	2,562	2,310

※ 해외근무수당은 「해외사무소 파견직원의 보수 및 여비지침」 제2조에 의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별표 2> <이동 2023.12.28.>

해외이전비

구 분	지원내용
15큐빅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15큐빅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25큐빅을 넘는 경우에는 25큐빅을 상한으로 함)	15큐빅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큐빅초과 25큐빅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